KOSHA GUIDE C - 52 - 2016

(3) 신호방법은 작업 전에 결정하고 근로자에게 반드시 주지시켜야 한다.

9.3 신호체계

- (1) 작업전 반드시 신호체계를 구비하여야 한다.
- (2) 신호체계는 가능한 단순해야 하며 관련 근로자가 동시에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(3) 작업 전에 결정된 신호체계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주지시켜야 한다.

9.4 출입통제 등

- (1) 정해진 근로자 이외의 모든 사람에 대한 작업장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.
- (2) 정해진 차량 이외의 모든 차량에 대한 작업장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.
- (3) 야간작업 개시와 종료시에는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(4) 야간작업일지를 기록하고 다음 작업반(조)에게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
- (5) 근무조 교대시 소화기, 비상조명기기 및 전원스위치 위치를 다음 작업반에게 알려주어야 한다.

9.5 장비작업

- (1) 야간작업에 투입된 모든 차량 및 건설장비는 전조등을 켜야 하며 후진시 경고음을 작동하여야 한다.
- (2) 야간작업에 투입된 모든 차량 및 건설장비의 운전원에게 신호수의 신호를 준수 하도록 신호방법 및 신호체계를 미리 주지시켜야 한다.

9.6 비상시 긴급 안전조치